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259
------	------

2024. 12.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2.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 제안이유

-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다.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라. 어려운 용어 “요하는” 등 정비

III.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 명칭의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일본어 투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됨.

2. 일괄 개정 방식 및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동 조례안이 활용하고 있는 일괄 개정 또는 일괄 정비 방식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조직개편, 용어순화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조례들이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나 개정 대상이 유사한 복수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을 통해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임.
- 이러한 일괄 개정 방식은 개별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입법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¹⁾,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²⁾에서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괄개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인용

1) 정부의 경우 「중앙행정관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방이양일괄법)이나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의 일괄개정방식 법률안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2009년 이후 총 44건, 경기도는 2022년 이후 11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 이후 20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이 처리됨.

2)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조례를 개정하면서 A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B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조례와 B조례를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일괄개정조례)이 있음(「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 p.391).

조문 및 부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로 지정되어 정비가 권고된 ‘요하는’ 등의 용어를 올바른 말로 순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총 876개³⁾ 중 83개(조문 108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제명 등을 현행화하는 조문 23건(조례 14개)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을 정비하는 조문 28건(조례 24개), ‘요하는’ 등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조문 55건(조례 50개), 그 외에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조문 2건임(조례 2개) [참고자료 1].

< 정비유형별 세부사례 >

정비유형	세부사례
인용조문 및 제명 현행화(2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2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담당관 ⇒ 정보시스템과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여성가족실장 ○ 소상공인담당관 ⇒ 소상공인정책과장
어려운 용어 순화(5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하는 ⇒ ~이 필요한 ○ 요하지 아니하다 ⇒ ~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 외(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오기 정정

-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현행화하여 그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어려운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조직개편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⁴⁾, 법령 및 조례 개정

3) 서울시 조례와 규칙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조례 876건, 규칙 234건, 훈령 34건, 예규 12건이 등록되어 있음.(2024.12.4.기준)

4)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8월 18일 교통정보과를 미래첨단교통과로, 2023년 12월 29일 남북협력과를 평화기반조성과로 각각 개편하였음.

따른 인용조문이 현행화되지 못한 조례⁵⁾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형식적인 일괄개정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2006년부터 “요하다” 등의 용어를 일본식 용어로 지정하여 정비를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시 여전히 이러한 권고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 및 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하지만, 누락된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가 있음.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9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요하는”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회사항: 협의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준하 (☎2133-6691)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 공공사용”을 “공공사용”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

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을 “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운영의 관리대행)”을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을 “관리대행업자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를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란 중 “교통정보과”를 모두 “미래첨단교통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을 요하는”을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을 요하는”을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

다.

제2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분해를 요하는”을 “분해가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기획관”을 “건축기획관”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관”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다목 단서 중 “보온을 요하는”을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중 “보온을 요하는”을 각각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회복을 요하는”을 “회복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을 요하는”을 “기술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설치를 요하지”를 “설치가 필요하지”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12조의1제2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강진단을 요하거나”를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를 “자원회수시설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관국(과)란 중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을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을 “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하

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
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빅데이터담당관”을 “데이터전략과장”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을 “건축기획관, 교통
운영관”으로 한다.

제79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u>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p> <p>2.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 ----- ----- ----- -----</p> <p>2.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u>사용</u> <u>공공</u> <u>사용</u>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u>공공</u> <u>사용</u> -----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 ----- ----- ----- ----- -----.</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은 <u>정보공개담당관</u>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 ----- <u>정보시스템과장</u>----- ----- ----- ----- ----- -----.</p>
<p>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u>정보공개담당관</u>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 ----- ----- ----- ----- ----- <u>정보시스템과장</u> -----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장 <u>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u></p> <p>제7조(<u>관리·운영의 관리대행</u>) ① ~ ③ (생략)</p> <p>제10조(<u>관리대행업자 선정</u>) ① (생략)</p> <p>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수탁기관</u>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2장 <u>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u></p> <p>제7조(<u>관리·운영의 대행</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u>관리대행업자 선정</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관리대행업자</u>를 ----- ----- -----.</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 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소방 특별조사</u>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p> <p>④·⑤ (생략)</p> <p>[별지 제1호서식]</p>	<p>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화재 안전조사</u> -----</p> <p>-----</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서식]</p>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생년월일</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주소</td> <td></td> <td>연락처</td> <td></td> </tr> <tr> <td></td> <td>거래은행</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고사항</td> <td>적발일시</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대상건물</td> <td>건물명(상호명)</td> <td colspan="2"></td> </tr> <tr> <td>주소 또는 위치</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기술</td> </tr> </table>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적발일시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기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생년월일</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주소</td> <td></td> <td>연락처</td> <td></td> </tr> <tr> <td></td> <td>거래은행</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고사항</td> <td>적발일시</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대상건물</td> <td>건물명(상호명)</td> <td colspan="2"></td> </tr> <tr> <td>주소 또는 위치</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기술</td> </tr> </table>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적발일시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기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적발일시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기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적발일시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기술																																																																									
<p>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등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p> <p>(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p> <p>※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p>	<p>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등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p> <p>(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p> <p>※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읍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촉) 안전감사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p> <p>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및 <u>중앙건설기술심의회</u> <u>위원회의</u> 위원</p> <p>2. <u>한국시설안전공단</u>,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p> <p>3. (생 략)</p>	<p>제4조(위촉) ----- ----- ----- -----.</p> <p>1. ----- ----- <u>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u> <u>회</u>-----</p> <p>2. <u>국토안전관리원</u>----- ----- ----- -----</p> <p>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p> <p>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p> <p>4. (생 략)</p> <p>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재정 투·융자 심사</u>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p> <p>3. ~ 5.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 ----- -----.</p> <p>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업무)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투자심사</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시민협력과장</u>으로 한다.</p> <p>⑥ ~ ⑩ (생략)</p>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평</u> <u>가담당관</u>-----.</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별표 2]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연 번	통합대상	주관 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연 번	통합대상	주관 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 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 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교통정보과</u>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미래첨단교통과</u>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 등 + 가로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교통정보과</u>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 등 + 가로등 + CCTV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u>미래첨단교통과</u>
5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5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 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3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p> <p>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p> <p>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5조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생 략)</p> <p>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 략)</p> <p>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u>긴 급을 요하는</u> 공사는 제외</p> <p>3. (생 략)</p>	<p>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긴 급한</u> --</p> <p>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6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6. (생 략)</p>	<p>제10조(위원의 해촉)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병가) ① (생 략)</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u>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22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요양</u> <u>이 필요한</u> ----- ----- --.</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u>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u>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1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6. (생 략)</p>	<p>제13조(위원의 해촉)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p> <p>3. ~ 6.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제22조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상 <u>장기치료를</u>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2. (생략)</p>	<p>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장기 치료가</u> <u>필요한</u> ----- -----</p> <p>2.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3조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격 및 해촉)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4. (생략)</p>	<p>제3조(자격 및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 ----- -----</p> <p>3·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2. (생략)</p> <p>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u>분해</u>를 요하는 건설기계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한다.</p> <p>② (생략)</p> <p>[별지 제6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th> </tr> <tr> <th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1. 공사내역</th> </tr> <tr> <th rowspan="2">공사명</th> <th rowspan="2">장소</th> <th rowspan="2">공사구분</th>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3">공사비</th> <th rowspan="2">공사기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총공사비</th> <th>건설기계부분</th> <th>그밖의비용</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공사명	장소	공사구분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총공사비	건설기계부분	그밖의비용										<p>제17조(사용료의 산정)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분해가 필요한</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6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th> </tr> <tr> <th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1. 공사내역</th> </tr> <tr> <th rowspan="2">공사명</th> <th rowspan="2">장소</th> <th rowspan="2">공사구분</th>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3">공사비</th> <th rowspan="2">공사기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총공사비</th> <th>건설기계부분</th> <th>그밖의비용</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공사명	장소	공사구분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총공사비	건설기계부분	그밖의비용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공사명	장소	공사구분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총공사비	건설기계부분	그밖의비용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공사명	장소	공사구분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총공사비	건설기계부분	그밖의비용																																																																									

2. 건설기계 공사개요

첨부: 공사 설계도서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건설
기계 도급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도로교통사업소장 귀하

2. 건설기계 공사개요

첨부: 공사 설계도서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건설
기계 도급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 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5. (생 략)</p>	<p>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5.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u>정리를</u> 요하는 사항</p> <p>2. ~ 4. (생략)</p> <p>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주택공급기획관</u>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④ ~ ⑩ (생략)</p>	<p>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 ----- -----.</p> <p>1. ----- ----- <u>정리가 필요한</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건축기획관</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⑩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7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p> <p>⑤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상 <u>장기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2. (생략)</p>	<p>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u>장기 치료가 필요</u> <u>한</u> ----- ----- -----</p> <p>2.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8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시정명령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생략)</p>	<p>제21조(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p> <p>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29조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p> <p>가. ~ 라. (생략)</p> <p>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u>치료를 요하는</u> 질병</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 ----- <u>치료가 필요한</u> -----</p> <p>2.·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제30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 니할 수 있다.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 ----- ----- ----- <u>긴급한</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 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p> <p>1. (생 략)</p> <p>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안 전총괄관</u>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생 략)</p> <p>③ ~ ⑥ (생 략)</p> <p>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 (생 략)</p> <p>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p>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도로기획관</u>-----.</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 과 같음)</p> <p>③ ----- ----- -----</p>

현행	개정안
<p>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p> <p>가.·나. (생략)</p> <p>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 요하는</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p> <p>라. (생략)</p> <p>6. (생략)</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 <u>보온이</u></p> <p><u>필요한</u> -----</p> <p>-----</p> <p>-----</p> <p>-----.</p> <p>라.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제 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허가내용			
1.점용장소		2.점용면적	
3.취급품목			
4.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6.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7.점용료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 3)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 4)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제 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허가내용			
1.점용장소		2.점용면적	
3.취급품목			
4.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6.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7.점용료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 3)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이 필요한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 4)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종류 ()	관리 번호	○○○○년 - ○○구 - ○○○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 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료를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종류 ()	관리 번호	○○○○년 - ○○구 - ○○○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 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료를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현행	개정안
<p>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p> <p>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p> <p>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u>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u>.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 요하는</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p>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p>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p>	<p>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p> <p>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p> <p>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u>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u>.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이 필요한</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p>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p>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제32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u>정리를</u> 요하는 사항 3. 4. (생략) 	<p>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정리가 필요한</u> ----- 3. 4. (현행과 같음)
<p>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u>정리를</u> 요하는 사항 2. ~ 4. (생략) 	<p>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정리가 필요한</u> ----- 2.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3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6. (생략)</p>	<p>제9조의4(위원의 해촉)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4조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19조(위원의 해촉)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5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p> <p>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u>전문성을</u>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전문성이 필요한</u>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6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u>전문성을 요하는</u>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투자유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 ----- <u>전문성이</u> <u>필요한</u>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7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⑥ (생략)</p> <p>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7.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긴급한 조치가 필요한</u>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3. ~ 7.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8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병가) ① (생 략)</p> <p>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을 요하는</u>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27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요양이 필요한</u> ----- -----.</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u>전문지식을 요하는</u>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 ----- <u>전문지식이 필요한</u>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4. ~ 7. (생 략)</p>	<p>제8조(위원의 해촉)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4. ~ 7.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2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용도) ① (생략)</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 다. (생략)</p> <p>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u>긴급을 요하는</u> 설치 및 보수·보강</p> <p>마. ~ 자. (생략)</p> <p>2.·3. (생략)</p>	<p>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p> <p><u>긴급한</u> ----- -----</p> <p>마. ~ 자.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4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생 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6. (생 략)</p>	<p>제8조(위원의 해촉)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p> <p>3. ~ 6.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5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생략)</p> <p>② 수탁 교육·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u>긴급을 요하는</u> 수탁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 <u>긴급한</u> -----</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6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u>긴급한</u> ----- -----.</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7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2. ~ 4. (생략)</p>	<p>제5조(위원의 해촉) ----- ----- ----- -----.</p> <p>1.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8조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6. (생 략)</p>	<p>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49조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u>회복을</u>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 ----- <u>회복이 필요한</u> ----- -----.</p> <p>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 5. (생 략)</p>	<p>제11조(해촉)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치료가 필요한</u> ----- ----- ----- --</p> <p>3. ~ 5.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제5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 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u>기술을</u> <u>요하는</u> 사무</p> <p>4. (생략)</p>	<p>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기술이</u> <u>필요한</u> --</p> <p>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u>설치를 요하지</u> 아니할 것</p> <p>5.·6.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7조(가설건축물)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설치가 필요하</u> <u>지</u>-----</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4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 ⑦ (생략)</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5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심의 안건이 <u>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u>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p> <p>⑥ ~ ⑩ (생략)</p> <p>제12조의1(소위원회) ① (생략)</p> <p>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생략)</p> <p>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u>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u></p> <p>3.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 ----- ----- -----.</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1(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6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p> <p>1. (생 략)</p> <p>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u>건강진단을 요하거나</u>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p> <p>3. 4.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8조(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건강진단</u>이 필요하거나----- -----</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7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생략)</p>	<p>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긴급하거나</u> ----- ----- -----.</p> <p>④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9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p> <p>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 ⑥ (생 략)</p>	<p>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긴급하거나</u>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0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8(시정명령)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센터에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생략)</p>	<p>제4조의8(시정명령)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 -----.</p> <p>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1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감사담당관</u>이 된다.</p> <p>④·⑤ (생략)</p> <p>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생략)</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청렴담당관</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p> <p><u>긴급하거나</u> ----- ----- -.</p> <p>⑦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3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회의)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u>긴급을</u>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u>긴급하거나</u>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4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p> <p>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u>자원순환과</u> 협의회 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③ (생 략)</p>	<p>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자원회수시설과</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5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권익보호 담당관)	◦십대여성일 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쉼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여성가족실 (양성평등 담당관)	◦십대여성일 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쉼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십대여성건 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십대여성건 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관악늘푸른 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관악늘푸른 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강북늘푸른 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번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강북늘푸른 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번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제67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u>여성가족정책실장</u>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p> <p>② (생 략)</p>	<p>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 ----- <u>여성가족실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8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여성가족정책실장</u>, 재무국장, 재정기획관</p> <p>3. (생략)</p> <p>④·⑤ (생략)</p>	<p>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여성가족실장</u>----- -----</p> <p>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9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u>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 아담당관은</u>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p> <p>③ ~ ⑥ (생략)</p>	<p>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 <u>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 당관</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0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 략)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행정1부시장, <u>여성가족정 책실장</u>, 평생교육국장 2. ~ 5. (생 략) ④ · ⑤ (생 략)</p>	<p>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여성가족실 장</u>-----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1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여성가족정책실장</u>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여성가족실장</u>-----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2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노동정책담당관</u> 으로 한다. ⑥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노동정책과장</u>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 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u>소상공인 담당관</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④ ~ ⑦ (생 략)</p>	<p>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소상공인 정책과장</u>-----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용자계정 : <u>소상공인담당관</u></p> <p>2. (생략)</p> <p>3. 사회적경제계정 : <u>공정경제담당관</u></p> <p>4. (생략)</p> <p>③ (생략)</p>	<p>-----</p> <p>-----</p> <p>---</p> <p>1. ----- <u>소상공인정책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3. ----- <u>공정경제과장</u></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제75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공정경제담당관</u>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공정경제과장</u>-----.</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7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 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빅데이터담당관</u> 으로 한 다. ⑦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데이터전략과장</u> -----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8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u>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u></p> <p>2. (생 략)</p>	<p>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u>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u> -- -----</p> <p>2.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79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 등) ① (생 략)</p> <p>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 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 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 별시 <u>성평등위원회</u>에서 심의한 다.</p>	<p>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 <u>양성평등위원회</u>에서 심의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제80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81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p> <p>4. (생 략)</p>	<p>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p> <p>-----</p> <p>-----</p> <p>-----</p> <p>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82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 조성·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p>

신 · 구조문대비표

(제83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침서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p> <p>제8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u>성평등위원회</u>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u>성평등위원회</u>는 이에 응한다.</p>	<p>제6조(지침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 -----.</p> <p>제8조(자문) ----- ----- ----- <u>양성평등위원회</u> ----- ----- <u>양성평등위원</u> <u>회</u> -----.</p>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의 순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준하 주무관(2133-6691)